

# 「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」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## 1. 제안이유

「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」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사업성과를 위해 재계약하고자, 「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 제15조, 제16조 및 「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4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.

## 2. 추진근거

- 가.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5조, 제16조
- 나.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4조의3

## 3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사회적경제 허브센터
- 개관일 : 2018. 6.
- 위치 : 금천구 탑골로8길 23
- 규모 : 부지 450㎡, 연면적 688.95㎡ (지상 1~4층)
- 공간구성 : 사회적경제기업 입주공간, 커뮤니티 공간, 세미나실 및 운영사무실
- 운영인력 : 4명(센터장 1, 팀장 1, 매니저 2)
- 입주기업 : 9개 기업(사무실 5, 코워킹스페이스 4석)

나. 현 운영현황

- 1) 위탁기간 : 2020. 7. 1. ~ 2022. 6. 30. (2년)
  - 2) 수탁기관 : 사회적협동조합 금천사회경제연대(이사장 : 김혜숙)
- 다. 사업예산 : 250,000천원(구비)

라. 재계약 내용

- 1) 위탁사무명 :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
  - 2) 위탁기간 : 2022. 7. 1. ~ 2023. 6. 30. (1년)
  - 3) 수탁기관 : 사회적협동조합 금천사회경제연대
  - 4) 위탁업무
    - 가)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
    - 나) 사회적경제 활성화, 지역특화사업 및 자율기획 사업
    - 다)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공모사업
    - 라) 기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업 등
  - 5) 선정방법 :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재계약 적격 여부 심의
- 마. 재계약 추진 필요성
- 1) 다년간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및 센터 운영 경험을 축적해 온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으로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유지
  - 2) 재계약을 통해 그간의 사업성과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

## 4. 추진일정

- 가. 2022. 2. : 구의회 상임위 안건 보고
- 나. 2022. 5. :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(재계약 적정여부 심의)
- 다. 2022. 5. : 재계약 체결

## 5. 관계법령

- 가.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5조, 제16조
- 나.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4조의 3

## 관 계 법 령

### ▣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

#### 제15조(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)

-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 1.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
  2.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에 관한 상담
  3. 경영, 노무, 회계, 마케팅 상담, 교육, 홍보 등 경영지원 활동
  4. 사회적경제 조직 공간지원
  5.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
  6.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
  7. 사회적경제와 공공분야 공모 사업의 정보·자료 제공
  8.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
-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#### 제16조(위탁계약 및 기간)

-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,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.

-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.
-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### ▣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#### 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

-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 할 수 있다.
 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  4.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#### 제4조의3(구의회 동의 및 보고)

-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.